

# 서울대학교 창업학점제 운영 지침

제정 2022. 11. 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학점제”란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정규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창업현장실습”이란 실제 창업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과목책임교수”란 본교 교원(비전임교원 포함)으로서, 창업현장실습의 담당 교원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① 창업학점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창업지원단장이 되고,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연구부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학점제 신청 승인
2. 창업학점제 학점 인정
3. 그 밖에 창업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창업기획지원팀장으로 한다.

**제4조(운영시기)** 창업학점제는 정규학기에 운영한다.

**제5조(교과과정 편성)** ① 창업지원단은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교육기구를 통해 교무처 교무과에 교과목 편성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창업현장실습의 교과과정 편성기준은 [별표]과 같이 한다.

**제6조(신청자격)** ①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학기 등록하고,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 관련 교과목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과목을 1개 이상 이수한 경우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공동대표를 포함한다)로 지정되어 있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로서 위원회에서 공동창업자로 인정한 경우

② [별표2]의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다.

**제7조(신청 및 선발)** ①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창업현장실습 수행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② 창업지원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현장실습 학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교무처 학사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등)** ① 창업지원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현장실습 과목책임교수와 개설 대학(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학(원)을 통해 교무처 학사과로 개설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만 창업현장실습을 수강할 수 있으며,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일정에 따라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 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9조(학점인정 등)** ① 창업현장실습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별표1]의 이수시간 이행
2. 과목책임교수의 학기 중 4회 이상 창업현장실습 지도 및 현장점검 1회

② 창업현장실습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월별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해당 학기 종강 15일 전까지 과목책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월별보고서는 별도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목책임교수는 창업현장실습의 학점인정을 위하여 과목책임교수평가서(별지 제5호서식)를 해당 학기 종강 7일 전까지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창업지원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현장실습 학점인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교무처 학사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취득학점)** ① 창업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창업현장실습: 한 학기 최대 6학점(석사과정 3학점)

2. 창업현장실습을 통해 재학 중 취득 가능한 학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학사과정: 최대 9학점

나. 석사과정: 최대 3학점

다. 박사과정: 최대 6학점

라. 석사·박사통합과정: 최대 9학점

② 창업현장실습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학기당 취득학점에 포함된다.

③ 창업현장실습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의 소속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성적)** ① 창업현장실습의 성적은 급락(S/U)만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창업현장실습에 선발된 학생이 창업 업종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U” 를 부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S” 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2022. 11. 2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창업현장실습 교과과정 편성기준(제5조 및 제9조 관련)

교과목명	이수구분	이수시간	인정학점
창업현장실습 1	일반선택	6주(240시간)이상 12주(480시간)미만	3학점
창업현장실습 2	일반선택	12주(480시간)이상	6학점

[별표2] 창업현장실습 제외업종(제6조 관련)

1.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함.
2. 부동산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함.
3. 숙박 및 음식점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숙박 및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함.
4.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
5.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그 밖에 학생 창업에 적합한 업종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비고 :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신청자	성명		학번	
	소속	대학(원)	학과(부)	전공
	휴대전화			이메일

창업 현황	업체명	대표자	개업연월일	창업기업참여형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종류(업태)	사업의종류(종목)

신청내역	신청 학기	신청 학기	신청 학기 등록(예정)	졸업예정 학기	학기
	학년도	학기	<input type="checkbox"/> 예	학년도	학기
	활동주수 및 신청학점 <input type="checkbox"/> 6주-12주(3학점) <input type="checkbox"/> 12주 이상(6학점)				
창업교과목 이수내역 교과목번호:                      강좌번호:                      교과목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서울대학교 창업학점제 운영 지침」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장** 귀하

제출서류	1. 창업현장실습 수행계획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 창업현장실습 수행계획서

신청자	성명	학번
업체명		
창업 현장실습 수행계획	창업현장실습 신청목적	
	창업 연혁 및 주요활동 (개요, 추진실적, 성과 등)	
	창업현장실습과 전공(다전공)과의 연계성	
	창업현장실습을 통한 성과	
월(활동주수)	월별 활동 계획	
월( 주)		
월( 주)		
월( 주)		
월( 주)		

## 창업현장실습 월별보고서(    월)

신청자	성명		학번		
	소속	대학(원)	학과(부)	전공	
업체명					
창업 현장실습 월별수행 결과	당월 수행 계획				
	주요 추진 실적				
	결과물(이미지, 시제품 등)				
주차	세부 활동 내용				
1주					
2주					
3주					
4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과목책임교수

(서명 또는 인)

## 창업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신청자	성명		학번		
	소속	대학(원)	학과(부)	전공	
과목	교과목번호		강좌번호		교과목명
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
업체명					
창업현장 실습 수행결과	창업현장실습 당초 수행계획				
	주요 추진 실적				
	결과물(이미지, 시제품 등)				
월(활동주수)	월별 활동 내용				
월( 주)					
월( 주)					
월( 주)					
월( 주)					
「서울대학교 창업학점제 운영 지침」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창업현장실습 과목책임교수평가서

신청자	성명		학번	
	소속	대학(원)	학과(부)	전공
업체명				
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				
창업현장실습 지도내역	시기(회차)	세부 지도 내용		
	년    월    일 (1회)			
	년    월    일 (2회)			
	년    월    일 (3회)			
	년    월    일 (4회)			
현장점검 수행내역	수행일자	현장점검 세부 내용 및 검토의견		
	년    월    일			
창업현장실습 평가내역	세부평가항목	우수	보통	미흡
	창업활동			
	현장점검			
	결과보고			
	종합의견			
	최종평가	<input type="checkbox"/> S(Successful) <input type="checkbox"/> U(Unsuccessful)		

「서울대학교 창업학점제 운영 지침」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목책임교수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과목책임교수

(서명 또는 인)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장** 귀하

제출서류	월별보고서,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